

# 특별시·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226
----------	------

제안년월일: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기획경제위원장

## 1. 주 문

- 지역별·대학별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교사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거리를 현재 2km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는 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km로 제한하고 있어 주택가의 밀집,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교지 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대도시권 소재 대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도 중에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고 과밀화된 특별시·광역시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로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촉구·건의함.

### 3. 이송처

- 교육부장관

## 특별시·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로 기존 산업과 일자리가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내년부터 대학교의 입학정원보다 입학가능 학생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혁신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고, 지역별·대학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한 학교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대학교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거리인 2km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한 교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는 교지의 추가 확보가 어렵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시설을 조성할 수가 없게 된다.

교육부에서도 단일교지 인정 거리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고 지난 9월 교지 확보의 객관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인 경우에는 단일교지라고 인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계획은 여전히 지역별 상황과 대학별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20km' 등 획일적인 거리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대학교의 자율적인 혁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역과 현장이 연계된 고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고 과밀화된 특별시·광역시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거리 제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로 확대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